



제261회 임시회
2007. 6. 12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발 의 자 : 최미애 의원외 7인

□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7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07년 6월 5일

□ 제안 이유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5조 및 제33조,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·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- 여성가족부에서 설치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에 따른 후속조치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함(제41조)
- 나.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교육사업,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, 후생 복지사업 등으로 함(제42조)
- 다. 도지사는 센터를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45조)
- 라.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

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제47조)

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관련 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
여성가족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